11.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1999-22호 1999. 3. 13.

개 정 취 지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가. 장기할부조건의 적용범위에 현행은 상품 등의 판매 또는 건설 · 제조 및 용역의 제공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상품의 판매에만 한정되도록 하고 그 분할지급조건도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이상으로 변경함.

나. 거주자가 물품 또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이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도록 함.

다. 1998년도 중에 고용조정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된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 지급규정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이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

로 평가하도록 함.

마.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상장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상장일 이후 1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취득일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상장일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바. 연봉제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할 때에는 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연봉제 도입에 따른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마련함.

사. 갑근세납세필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현재 정부·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법인 등은 세무서장의 확인 절차없이 직접 발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등도 이를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증명서 명칭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증명서로 변경함.

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증빙서류로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하나 전기통신용역, 국외에서 제공받는 재화·용역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 효과와 무관한 경우와 택시운송용역, 토지·주택매매등 거래관행에 비추어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수취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함.

자. 각종 서식을 국세청장에 위임하여 서식의 간소화 및 전산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주택회보